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직인생략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금산빌딩) /전화*070-7858-0564 /팩스*02-782-6659

담당부서: 경영관리실 부서장: 임종근 실장 담당자: 변은지 과장 e-mail: eunji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1-10호

시행일자: 2026. 1. 8

수신자 '22년~'25년 교육 미이수업체

참 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

부회장		회 장	
전 무			
실 장			
팀 장		지시사항	
담 당		관계자협조	

제 목 : '22년~'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실시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협회는 「화장품법」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,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「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3. 관련: 화장품정책과-119(2026. 1. 7.) 업무 협조 요청

4. 상기 관련하여, 귀 사는 「화장품법」 제5조 제7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로서, '22년~'25년 기간 중 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, 1회에 한하여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,

5. 귀 사의 책임판매관리자는 2026년 3월 31일(화)까지 대한화장품 협회 교육센터(edu.helpcosmetic.or.kr)에서 「'22년~'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」 과정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, 관리자가 퇴사하거나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, **현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**

6. 아울러, 해당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, 2026년 교육 의무는 별도로 '26년 3월 이후에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'26년 3월 이후 이수 과정: 「보수교육 대상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」

붙임_ '22년~'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안내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